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55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허성무・박홍근・조계원

박해철 • 채현일 • 박용갑

박선원 • 김교흥 • 김동아

권향엽 · 정혜경 · 이강일

송재봉 • 이재관 • 한정애

윤종오 의원(16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·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 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9조제1항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각각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"를 "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"로, "경찰관서의 장은"을 "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관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"를 "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"로, "경찰관서의 장은"을 "경찰관서의 장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은"을 "경찰관서의 장은"을 "경찰관서의 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"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경찰청장"을 각각 "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6조 전단 중 "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"을 "보건복지부장관,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호의3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한다.

제18조의2 중 "경찰관서의 장"을 "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) 제9조(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 찰관서의 장-----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 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 찰관서의 장-----등(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 서 같다)의 조속한 발견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 에 필요한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 넷주소 및 「통신비밀보호법<sub>」</sub> 제2조제11호마목 ·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(이하 "개인 위치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 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 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

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1. ~ 4. (생 략)

-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,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<u>경찰관서의 장</u>의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 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되며, <u>경찰관서의 장은</u>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
# ⑤ (생략)

제9조의2(실종아동등 발견을 위 전한 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경 한 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경 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

서의 장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
<u>경찰관서의 장 또</u>
는 해양경찰관서의 장
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
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
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
하였던 자
<u>경찰관서의 장과</u>
해양경찰관서의 장은
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실종아동등 발견을 위
한 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<u>경</u>
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
서의 장

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 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 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 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<u>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</u> 에 <u>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</u> 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 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되며, <u>경찰관서의 장은</u>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- ③ <u>경찰관서의 장</u>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① 거친하기에 자하 거친하기
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은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 양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

#### 1. • 2. (생략)

#### ④ (생략)

- 제9조의3(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<u>경찰청장</u>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·수사 체계를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  - ② <u>경찰청장</u>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·수사를 위하여 필 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경찰청장</u>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
  - ③ ④ (생 략)
- 제10조(출입·조사 등) ① <u>경찰청</u> <u>장</u>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 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
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3(공개 수색·수사 체계
의 구축·운영) ① <u>경찰청장</u>
또는 해양경찰청장
<u>.</u>
· ② <u>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</u>
장
<u> </u>
·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
<u> 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3·4)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출입·조사 등) ① 경찰청
<u>장, 해양경찰청장</u>

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<u>경찰청장</u>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·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③ (생략)

제16조(관계 기관의 협조) <u>보건복</u>
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
아동등의 조속한 발견·복귀와
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
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· 1의2. (생략)

1의3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

②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
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관계 기관의 협조) <u>보건복</u>
지부장관, 경찰청장이나 해양경
<u> 찰청장</u>
제18조(벌칙)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
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

부한 자
2. ~ 4. (생 략)
제18조의2(벌칙) 제9조의2제1항을
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<u>경</u>
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
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u> 찰관서의 장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벌칙)
<u>경</u>
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
<u>서의 장</u>